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익직불제 관련 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92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익직불제 관련 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29.

3. 회 부 일 : 2025.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필지 정보는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이하 “농지이용실태조사”라 한다)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

Ⅲ. 검토의견

1. 공익직불제 관련 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농지법」 제54조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여기구의원안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생략)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 ----- ----- ---그 직무상----- ----- ----- -----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2.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3.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 등에 사용할

현행	여기구의원안
③·④ (생략)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이라 함) 제17조¹⁾에 따라 매년 직불제 등록 필지 중 일부를 선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행 점검²⁾을 실시함.

해당 준수사항 위반 농지는 「농지법」 위반(비농업용 시설 무단 설치 등)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익직불법상 농지 형상 점검 결과 위반 필지의 정보를 「농지법」 제54조³⁾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함으로써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⁴⁾에 따른 처분 명령 등 관리에 활

- 1) 공익직불법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등의 소유·거래 및 휴경 등 등록사항(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및 제19조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수거하게 할 수 있다.
- 2) 공익직불법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 3)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4)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농산물품질관리원)가 법 제37조제1항5)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6)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법」상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조사대상 필지 선정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후 략>
 -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5) **공익직불법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2.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6) **공익직불법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 처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농지법」 제54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 대장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⁷⁾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농지 형상 점검 결과의 제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활용 목적은 농지 정책 수립·농지대장 작성과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점검결과 위반 필지의 정보가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또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처럼 자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자료 연계가 미흡함에 따라, 부적정하게 이용되고 있는 농지가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아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일례로 감사원은 2023년 농지 형상 점검 결과 불법전용이 의심되는 93필지를 선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중 32필지가 부적정 이용으로 적발되었으나 2024년 농식품부가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필지는 이 중 3필지에 불과하였음.⁸⁾

7) 「농지법 시행령」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8) 감사보고서(2025.9.)

이에 개정안은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직불제 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지관리 점검자료 간 연계성을 제고하며 농지의 부적정 이용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37조제3항제3호는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정보의 제공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질 우려가 있음.

개정안 제3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는 제공 가능한 정보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3호는 농지법상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한다는 목적만을 규정할 뿐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제3호를 근거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 원칙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제3호와 관련하여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또는 한계를 법

9)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농지 형상 유지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된 농지의 지번, 적발 내용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공포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개정안에 따라 등록신청서상 정보 이용 등 동의서의 정비, 관련 기관의 시스템 정비, 농업인에 대한 안내 등 행정적·실무적 준비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률은 적어도 30일의 주지 기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보다는 공포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4

참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상 정보 이용 등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9쪽 중 제4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이프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도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발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발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9쪽 중 제5쪽)

본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본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제공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본인정보	항목
가족관계증명서	특정등록사항(등록기준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가족사항(가족관계명, 기타_성명, 기타_출생연월일, 기타_국가명, 가족_성명, 가족_출생연월일, 가족_폐쇄구분명, 가족_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표등본	열람대상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행정기관코드, 주민등록상태, 세대주의, 현주소, 도로명주소-현재) 세대주정보(주민등록번호-발급, 성명, 등록상태, 구성일, 구성사유,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세대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행정동명(행정동명) 주민번호정정이력(정정이전주민번호, 정정이후주민번호, 주민번호정정일자, 주민정정사유) 성명정정이력(정정이전성명, 정정이후성명, 성명정정일자, 성명정정사유) 주소이력(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기타1, 기타2, 도로명주소-이력) 현주소-상세)지역정보(지역코드, 지역명) 현주소-상세)상세주소(산, 번지, 호) 현주소-상세)특수지주소(특수지명, 특수지동, 특수지호) 도로명주소상세(도로명코드, 지하건물구분, 건물분번, 건물부번, 층), 전입일자(전입일자)
소득금액증명	민원인정보(성명, 민원인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법정동주소) 증명내용>출력정보(과세년도, 자료유형) 증명내용>소득증명(과세년도) 증명내용>소득증명>종합소득세(총결정세액) 증명내용>소득증명>종합소득세>수입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계, 분리과세) 증명내용>소득증명>종합소득세>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계, 분리과세) 증명내용>연말정산(귀속년도, 구분, 상호명, 정산사업자등록번호, 지급받은총액, 정산소득금액, 총결정세액, 비고)

2. 본인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에 관한 사항

- 제3자(이용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서비스 :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자격 확인 및 신청 서류 간소화
- 본인정보 제공목적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및 변경 시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3. 본인정보 제공 방법

- 일회성 제공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업무 종료일부터 1년까지 보유·이용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을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등록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본인정보 보유기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9쪽 중 제6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5.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등록신청 정보(농업인의 주소, 농지의 지번, 분·합필 및 환지 정보에 한함)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법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및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